

농촌 생활환경 정비구역의 설정

조영국 · 김성진

협성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 서울대학교 농업개발연구소

Spatial Delineation of Planning Unit for Rural Village Improvement

Cho, Young-Kuk * · Kim, Sung-Jin **

*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Hyupsung University

**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a basic spatial unit for rural village redevelopment plan. An ideal spatial unit need to satisfy three basic premises: to be homogeneous as rural community, to be appropriate to implement the project, and to be compatible with regional planning systems. A spatial unit could, empirically, be defined based on the homogeneity at first, and then appropriateness and compatibility could be used to adjust its boundary.

Mitan-Myun(13 villages), Pyungchang County, Dochuck-Myun(15 villages), Kwangju County, and Chuksan-Myun(28 villages), Kimje City in Korea were selected as case study areas. The degree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all possible pairs in each Myun was measured using spatial, socio-cultural, and economic indicators. Multidimensional Scaling(MDS) was used to identify a homogeneous spatial unit, and then indicators representing appropriateness and compatibility were used to adjust the identified boundary.

New districts which have two or three villages were suggested as a reasonable spatial unit for rural village redevelopment, and its boundary roughly overlaps with Bup-Jeong-Ri(法定里: a legally defined village).

I. 서 론

농촌의 생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

을 해 왔으나 계획 및 실행상의 비효율성 때문에 농촌의 생활환경은 계속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생활환경개선사업은 1957년의 지역사회개발사업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에서부터 행정리 이하의 자연부락 즉, 마을을 사업단위로 하고 있다(윤원근, 1997)¹⁾. 이는 마을이 농촌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이며, 오랜 역사를 가진 자연발생적인 실체라는 관행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류우익, 1988). 또한, 사업추진시 이해관계의 조정 및 합의 도출이 용이하고, 비교적 동질적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가 용이하다는 정책수행 과정상의 장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농촌인구가 격감하였고, 농업 생산방식의 전문화·규모화로 농가간 농업형태의 이질화가 심화되었으며, 도로·통신 등 사회간접 자본이 확충되어 종래의 마을 중심의 생활패턴이 변화되었으므로 마을이 사업단위로서 적절한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많은 연구들이 마을보다는 상위수준의 정비구역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류우익(1988)은 1개 면에 2~4개가 있는 초등학구권을 계획단위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정환 등(1992)은 중심마을을 설정하고 이와 인접한 몇 개의 자연부락을 합쳐 지구계획단위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농어촌연구소(1992)는 중심마을을 선정하여 주택 및 각종 기반시설투자를 집중시켜 새로운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농촌공간구조를 재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논의들은 공간체계상으로 마을과 면 사이에 위치하는 공간단위가 적합한 정비구역단위라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²⁾ 그러나 기존 논의들은 새로운 정비구역의 공간체계상 위상을 언급하는데 그치거나, 그 범역을 제시하더라도 명확한 설정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특성에 있어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특성과 변화된 생활패턴을 고려한 생활환경 정비구역의 설정방법에 관한 연구가 당면과제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적합한 계획단위, 즉 생활환경 정비구역의 성격을 가설적으로 제시하고, 이 가설을

바탕으로 경험적으로 정비구역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촌 생활환경 정비구역의 설정을 위한 기본시각

본 연구의 일환으로 행해진 선행 연구에서는 정비구역의 설정기준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³⁾. 첫째, 정비구역은 정책실행의 수단으로 인위적으로 구획된 단위지역이지만, 마을주민의 공간행동, 사회관계망과 유리될 경우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높여야 할 각종 시설의 이용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즉, 정비구역은 공동체적 속성, 등질적 속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농촌사회의 기초생활권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윤원근·이상문(1996)은 기초생활권의 기본적 속성이 정주공동성에 있다고 하였다. 정주공동성이란 일정한 영역내에서 인간의 정주에 필요한 경제 및 사회문화 그리고 공간적 측면에서의 공동적 기반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기존의 공동체 개념이 가지는 속성 가운데 영역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개념으로 보인다. 결국 기초생활권이란 농촌주민이 행하는 다양한 목적의 공간행동이 중첩된 일정한 지리적 영역을 의미한다. 최근 농촌주민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교통수단이 발전하여, 농촌주민의 공간행동 목적과 빈도가 과거와는 전혀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정주공동성이 발현되는 공간적 범역, 기초생활권의 범위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둘째, 정비구역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지구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환경의 질은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제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제고될 수 있다. 따라서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는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

1) 마을, 자연부락, 행정리의 공간적 범역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마을은 자연촌락의 일상적 호칭으로 농촌인의 자족적 생활권으로서 사회적 통일이 가장 잘 이루어진 지역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 실제로 농촌주민들의 인지적 마을 공간범위도 자연부락의 공간적 경계와 일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정진원, 1991, p84-86). 한편 자연부락의 경계는 행정리 경계내 포섭되거나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1985년 현재 약 2개정도의 자연부락이 하나의 행정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진원, 1991, p. 100). 따라서 대체적으로 마을 혹은 자연촌락은 행정리 이하의 정주단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2) 일본에서도 集落(우리의 자연부락과 유사)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기존 농촌개발사업방식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熊本 宏, 1994).

3) 윤원근·이상문(1996), “정주계층간 사회경제 및 공간관계 변화에 대응한 농촌공간정책의 방향 모색”, 한국농촌사회학회지, 농촌사회, 5 : 319-354.

윤원근·이상문(1996), “산간촌락에서의 정주공동성의 존재형태”, 한국농촌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1996. 5.31) 발표논문 : 1-16.

윤원근(1997), “한국농촌생활환경 정비구역 설정기준 및 범역에 관한 연구”, 설봉박근수 총장 산수기념논문집, 협성대학교 : 391-418.

의 투자가 합의도출, 이해관계의 조정가능성 그리고 이용자편의를 고려해 사업단위를 좁게 할 경우 도로, 상수도 등 광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대상 품목은 사업대상에서 부득이 제외되어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추후 관리상의 문제, 다른 시설과 기능적 상충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여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초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셋째, 농촌계획과 정비에 있어서 기본단위가 되는 정비구역의 설정은 상위 지역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비구역이 앞에서 언급한 주민생활권에만 기초하여 설정될 경우, 기존 행정구역조직과 배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비구역과 상위 지역계획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내용 측면에서 상충되지 않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비구역 역시 기존 행정구역조직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계획에 있어서 사업추진 및 관리가 기존 행정구역조직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3. 연구방법

1) 사례대상지역의 선정

우리 나라의 농촌은 산간지역, 평야지역, 도시근교지역으로 대별된다. 산간지역으로는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을, 평야지역으로는 전라남도 김제시 죽산면을, 그리고 도시근교지역으로는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을 사례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미탄면의 인구수는 '72년 7,641名에서 '94년 2,778名으로 64% 감소하였으며, 인구 과소지역에서 일어나는 절대적 인구규모 감소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고 537.7ha의 경지면적 중에서 밭이 차지하는 면적이 509.7ha(95%)로서 대표적인 산간지역에 해당한다. 죽산면의 인구수는 '80년 10,842名에서 '93년 6,315名으로 감소하였고, 2,557ha의 경지면적 중에서 논이 차지하는 면적이 2,386ha(93%)로서 대표적인 평야지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도척면의 인구수는 '72년 5,349名에서 '95년 5,613名으로 증가하였고, '95년 현재 87개소의 제조업체가 분포되어 있어 도시근교지역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표 1〉).

〈표 1〉 사례대상지역의 일반적 현황

	미 탄면 (산간지역)	죽 산 면 (평야지역)	도 척 면 (도시근교지역)
인구(명)	2,778 ('72년, 7,641)	6,315 ('80년, 10,842)	5,613 ('95년, 5,349)
농가(호)	650	1,412	659
비농가(호)	146	445	1,084
비농가율(%)	18	24	62
논(ha)	28	2,386	540
밭(ha)	509.7	171	527
밭率(%)	95	7	49
제조업체(개소)	1	4	87

註 1) 미탄면은 1994년, 죽산면은 1993년, 도척면은 1995년 기준

2) 미탄면, 죽산면, 도척면 행정자료에서 발췌

2) 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지표의 선정⁴⁾

생활환경 정비구역은 정주공동성을 기초로 설정되어야 하고, 투자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존 계획체계와 조화되어야 한다.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기보다는 정주공동성 기준으로 정비구역을 우선 설정한 후, 이를 투자타당성 및 기존계획체계와의 조화 기준으로 조정하는 순차적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정주공동성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공간적 공동성의 세 가지 하위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공동성이란 생활환경 정비구역이 마을을 넘어선 확대된 공간단위이기 때문에 마을간 관련성을 의미한다. 경제적 공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① 품앗이, ② 임대차, ③ 수위탁⁵⁾, ④ 노동력 고용, ⑤ 농기계임차⁶⁾, ⑥ 작목반, ⑦ 상품구매권, ⑧ 상수도공용의 존재 여부로 선정하였다. 사회문화적 공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① 공동 제의(祭儀), ② 공동 놀이, ③ 상조계(相助契), ④ 초등학구권을 선정하였다. 공간적 공동성을 나타내

4) 지표선정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윤원근(1997), “한국농촌생활환경 정비구역 설정기준 및 범역에 관한 연구”, 설봉박근수 총장 산수기념논문집, 협성대학교, 391-418.

윤원근·이상문(1996), “정주계층간 사회경제 및 공간관계 변화에 대응한 농촌공간정책의 방향 모색”, 농촌사회 제5집, 한국농촌사회학회지, 319-354.

는 지표로는 ① 공동생활시설, ② 공동생산시설, ③ 도로, ④ 수계, ⑤ 동일경작권, ⑥ 연담화(連擔化), ⑦ 근접성을 선정하였다.

3) 조사 및 분석

1996년 3-5월에 3개 면의 행정리 이장을 면담하여 타 마을간 정주공동성의 존재여부를 조사하였다. 미탄면의 경우에는 마을이 지형에 의해 분산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연담화와 동일 경작권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작 중심의 농업생산구조로 인해 마을간 농기계임차가 발생하지 않았다. 죽산면의 경우에는 수위탁은 농기계임차와 동시에 발생하여 제외하였고, 공동제의와 공동놀이는 현지 조사결과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계는 자연수계가 아니라 동진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인공수로이기 때문에 마을간 관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았다. 그 밖에 작목반, 상조계, 초등학구권, 상품구매권, 상수도 공용, 공동생활시설, 공동생산시설, 연담화 등은 현지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도척면의 경우에는 죽산면과 유사하게 상조계, 초등학구권, 상품구매권, 상수도공용, 공동생활시설, 공동생산시설 등이 현지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마을간 주택군의 연담화 현상은 도시근교지역의 특성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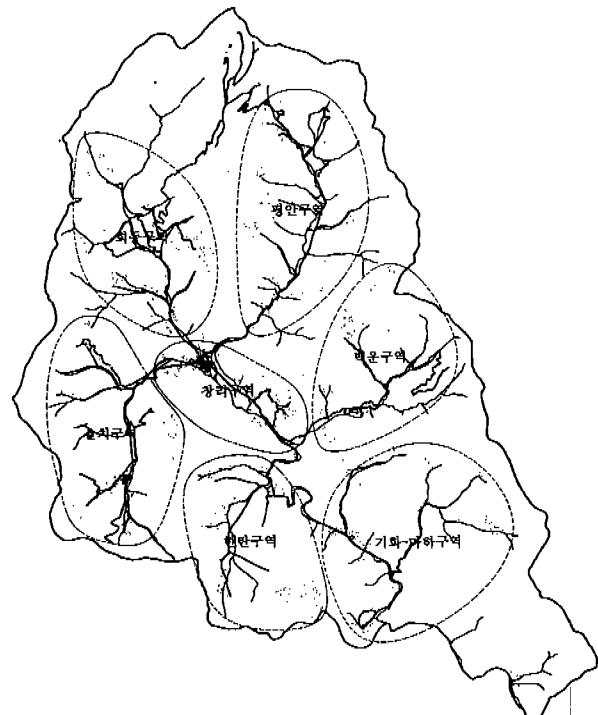
미탄면(13개 마을)은 총 78 쌍($13C_2 = 78$)의 마을 조합, 도척면(15개 마을)은 총 105 쌍($15C_2 = 105$)의 마을 조합, 그리고 죽산면(28개 마을)은 총 378 쌍($28C_2 = 378$)의 마을 조합에 대하여 관련성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두 마을간 관련성은 각 지표에 대하여 3점 척도로 수치화한 후, 이를 합산하여 관련성 행렬표를 작성하였다. 관련성 척도가 클수록 두 마을간 관련성은 크고, 따라서 두 마을간 정주공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마을간의 관련성 정도를 유사성(Similarity)의 측정치로 하여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을 이용 정비구역을 구획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1) 정비구역의 구획 및 조정

(1) 미탄면

미탄면은 정주공동성 기준에 의해 창1, 2, 3리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평안1, 2리, 백운리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회동1, 2리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기화리, 수청리, 마하리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그리고 울치리와 한탄리는 독립적인 정비구역으로 묶였다. 그러나 동일 정비구역으로 묶인 백운리와 평안리(평안1리, 평안2리)는 지형에 의해 분리된 마을일 뿐만 아니라 두 마을간 거리는 매우 멀어 투자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고, 공간계획체계와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백운리를 별도의 정비구역으로 분리하였다. 최종적으로 7개의 정비구역이 도출되었다.



〈그림 1〉 미탄면의 생활환경 정비구역도

- 5) 수위탁이란 농작업의 수탁과 위탁을 합쳐서 일컫는 용어로, 혼히 말하는 임대차와는 구분된다. 즉, 전체적인 경영 자체는 경영주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되, 노동력이나 기계부족 때문에 경운, 이앙, 방제, 수확 등 농작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타인의 노력에 의존하거나(위탁), 반대로 대행해주는 것(수탁)을 지칭한다.
- 6) 농기계임차이란 개인 소유의 농기계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말한다.

(2) 죽산면

죽산면은 정주공동성 기준에 의해 6개의 정비구역으로 구분되었다. 유희리, 삼진리, 부성리, 마포리, 대선리, 상포리, 신촌리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쌍궁리, 내재리, 신흥리, 제내리, 소제리, 원기리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오봉리, 내촌리, 하원리, 원기리, 신월리, 유흥리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외리, 명마, 신기리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신용리, 불당리, 신창리, 방목리, 영구리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그리고 복덕리는 독립적인 정비구역으로 묶였다.

죽산면의 경우도 미탄면과 마찬가지로 공간적 분리 정도가 심한 마을이 포함된 정비구역이 도출되어 정비구역의 조정이 필요하였다. 최종적으로 죽산 정비구역(죽산1리, 죽산2리, 죽산3리, 가칠리, 대죽리), 서포 정비구역(불당리, 신창리, 방목리, 원기리, 영구리, 소제리, 하원리), 연포-신흥 정비구역(유희리, 대선리, 상포리, 부성리, 삼진리, 신촌리, 마포리), 홍산-옥산 정비구역(신흥리, 명마리, 내재리, 오봉리, 외리, 내촌리, 쌍궁리) 등 4개 정비구역이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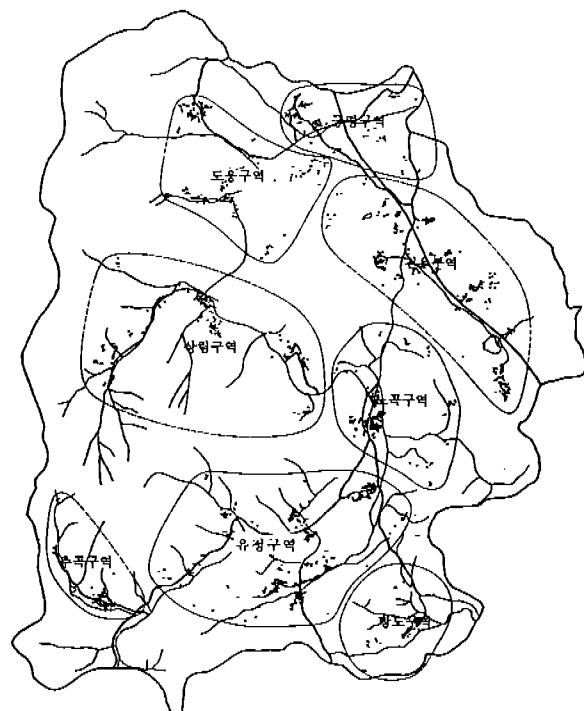
〈그림 2〉 죽산면의 생활환경 정비구역도

(3) 도척면

도척면은 정주공동성 기준에 의해 6개의 정비구역이 도출되었다. 즉, 유정1, 2리, 방도1리, 추곡리가 하나의 정비구

역으로, 도옹 1, 2리, 궁평리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였다. 그리고 상림리(상림1리, 상림2리, 상림3리), 진우리(진우1리, 진우2리, 진우3리), 그리고 방도2리, 노곡리는 각각 독립적인 정비구역으로 묶였다.

정주공동성 기준에 의해 구획된 정비구역 가운데 공간적으로 분리 정도가 심한 마을이 포함된 경우 조정하였다.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인 유정 정비구역(유정 1, 2리, 방도 1리, 추곡리)에서 추곡리를 독립된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분리하였고, 도옹 정비구역(도옹1, 2리, 궁평리)에서 궁평리를 독립된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분리하였다. 최종적으로 8개의 정비구역이 도출되었다.



〈그림 3〉 도척면의 생활환경 정비구역도

2) 정비구역의 유형과 특성 비교

정비구역의 유형은 중심지 정비구역과 배후지 정비구역으로 구분되는데, 배후지 정비구역은 옆마을과 평면적으로 확대되어 중심지 정비구역과 연계성을 갖는 정비구역이며, 중심지 정비구역은 시설, 활동 등의 측면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비구역을 의미한다.

(1) 중심지 정비구역

산간지역인 미탄면과 평야지역인 죽산면은 면소재지가 위치한 마을을 중심으로 중심지 정비구역이 형성되고 있으며, 도시근교지역인 도척면은 면소재지가 위치한 도곡리 외에 진우리를 중심으로 또 다른 하나의 중심지 정비구역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급격한 도시근교화로 인하여 진우1리, 진우2리, 진우3리에 인구, 가구, 시설 등이 급증하여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3개 면의 중심지 정비구역 인구수는 약 1,000명 정도이며, 농가율은 미탄면이 73.4%로서 가장 높고, 죽산면이 52.2%로서 절반 정도이고, 도척면은 25% 정도로서 비농가가 더 많다. 산간지역인 미탄면의 중심지 정비구역의 경우 인구수가 가장 많으나 대부분 農家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근교지역인 도척면의 중심지 정비구역은 비농가의 구성이 훨씬 많아 도시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중심지 정비구역 특성

	유형	소속마을	인구(人)	농가율(%)
평창 미탄	산간지역	창1, 2, 3리	1,336	73.4
김제 죽산	평야지역	죽산1, 2, 3리, 가칠, 대죽	905	52.2
광주 도척	도시근교 지역	노곡리	1,070	26.5
		진우 1, 2, 3리	1,141	27.8

(2) 배후지 정비구역

배후지 정비구역의 인구수는 평야지역인 죽산면이 가장 많고, 도시근교지역인 도척면, 산간지역인 미탄면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후지 정비구역의 농가율은 산간지역인 미탄면과 평야지역인 죽산면의 경우 80% 이상으로서 매우 높고, 도시근교지역인 도척면은 약 45%로서 낮게 나타났다. 도척면의 경우 배후지 정비구역에도 공장과 식당 등 비농업적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가구 구성도 농가보다는 비농가가 더 많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배후지 정비구역 특성

	유형	인구(人)	농가율(%)
평창 미탄	산간지역	240	89.9
김제 죽산	평야지역	876	82.8
광주 도척	도시근교지역	571	45.3

5. 결론

본 연구는 농촌생활환경 정비구역의 설정을 위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비구역을 경험적으로 도출하여 하였다. 정비구역의 범역은 정주공동성을 반영해야 하고, 사업대상품목에 따라 사업지구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종합적인 사업지구로서 기능해야 하며, 그리고 기존 지역계획체계-행정조직에 기초한 지역계획체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세 가지 설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공간범위를 경험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마을간 상호 관련성을 측정한 후, MDS기법을 적용하여 관련성이 높은 마을조합을 도출하였다. 이 마을 조합을 상기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다. 사례지역은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3개 사례지역은 각각 산간지역, 평야지역, 그리고 도시근교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3개 지역의 정비구역을 정주공동성 기준으로 먼저 묶고, 시설투자의 타당성, 지역계획 체계와의 조화 기준으로 조정한 결과, 농촌생활환경 정비구역의 범역은 법정리 규모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인구 규모가 큰 마을은 인접 마을과의 관련성이 약하고, 독립적인 공간단위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향후 인구감소, 농가소멸이 계속된다면 정비구역은 전체적으로 현재의 법정리 규모로 수렴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비구역의 유형은 중심지 정비구역과 배후지 정비구역으로 구분된다. 두 정비구역 유형간에는 인구규모 및 농가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며, 동일 유형의 정비구역은 지역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간지역(평창군 미탄면)의 중심지 정비구역은 평야지역(김제시 죽산면)이나 도시근교지역(광주군 도척면)의 중심지 정비구역에 비해 농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교지역의 배후

지 정비구역은 산간지역 및 평야지역의 배후지 정비구역과 중심지 정비구역에 비해서 농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조건과 도시근교화 요인이 정비구역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볼 때, 향후 정비사업의 내용 결정이나 추진은 지역 특성이나 정비구역 유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탄면과 같은

산간지역의 중심지 정비구역에 있어서 재정비사업은 배후지 정비구역과 마찬가지로 생산환경 측면을 중심으로 한 재정비계획이 실시되어야 하며, 비농업인구와 시설이 혼재된 도시근교지역의 배후지 정비구역은 중심지 정비구역과 마찬가지로 생활환경 측면을 중심으로 한 재정비계획이 입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參 考 文 獻

1. 농어촌연구소(1992), 농어촌 중심마을 정주체계의 개발 및 정비, 농어촌진흥공사 보고서.
2. 류우익(1988), “농촌지역 하위정주체계의 개선방안”,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3. 박시현·김정연·이상문(1995),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어촌마을 정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319.
4. 윤원근(1997), “한국농촌생활환경 정비구역 설정기준 및 범역에 관한 연구”, 설봉박근수 총장 산수기념논문집, 협성대학교, 391-418.
5. 윤원근·이상문(1996), “정주계층간 사회경제 및 공간관계 변화에 대응한 농촌공간정책의 방향 모색”, 농촌사회 제5집, 한국농촌사회학회지, 319-354.
6. 윤원근·이상문(1996), “산간촌락에서의 정주공동성의 존재형태”, 한국농촌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1996. 5.31) 발표논문, 1-16.
7. 이정환·윤원근·이병기·김정연·이상문(1992), 농촌생활환경 정비와 면단위 정주권 개발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13.
8. 정진원, 1991, 한국의 자연촌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 熊本 宏(1994), 地域農業의 確立, 農林統計協會.